

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3일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, 입법 취지 및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자활기금 연체이자를 하향조정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에 맞추어 근거법령 및 내용을 정비함(안 제1조부터 제3조)
- 사업 신청후 지원대상자의 결정, 사업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규정(안 제7조)
- 연체이자를 하향 조정함(안 제8조)
 - 연체이자 12퍼센트 → 대출금리(1퍼센트)에 3퍼센트를 더한 금리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
영동군의회

- 전 화 : 043)740-3048, 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”를 “제18조의7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국비·도비”를 “국가의”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영 제3조에 따른”을 “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개인·기관·단체 등이”를 “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”로, “별지 제1호 서식을”을 “별지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”로, “신청”을 “제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자격, 기금용도 적합여부 및 신청금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③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2호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연 12퍼센트의”를 “대출금리에 연 3퍼센트의 금리를 더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영동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제18조의7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자활기금 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<u>국비·도비 보조금</u> 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국가의</u> -----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·2. (생 략) 3. 그 밖에 영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·교육급여·주거급여 수급자(이하 “수급자”라 한다)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 	<p>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</u> -----

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신청 등) ① 제6조에 따른 개인·기관·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·② (생략)
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,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 12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

제7조(지원신청 등) ① -----
---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

별지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--
---- 제출-----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자격, 기금용도 적합여부 및 신청금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③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2호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-----

---- 대출금리에 연 3퍼센트의 금리를 더하여 -----
--.

④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8조의7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적립금액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 <개정 2022. 1. 28.>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.

제26조의3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<개정 2015. 4. 20.>

1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
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

3.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
4.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
5.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
6. 기금의 운용수익

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에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7. 16.>

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(補填)
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5.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6.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 - 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 - 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
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
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
제26조의5(기금의 운용·관리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